

제정 2020. 3. 1.	개정 2021. 5. 11.	개정 2021. 7. 7.	개정 2022. 12.	개정 2026. 7.
규정 항목	내 용			
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	-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제 1학기 이내에, 박사과정은 입시 이전에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-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			
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(§11-④)	해당사항 없음.			
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7-③)	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. 다만, 학연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.			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(교과구분이 '전공'인 교과목) (§18-④)	- 학생은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교육과정에서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은 15학점, 석박사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※ 전공역량과목 중 전공선택, 연구역량과목, 핵심역량과목 제외			
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6-③)	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해외 대학원 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.			
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.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(§31-②)	-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. - 외국어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			
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(§34-②)	전남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.			
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(§37)	- 지도교수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- 논문지도위원회는 학생의 교과과정 추천 등 학생의 대학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. - 졸업논문의 최종심사 전까지 지도교수와 학생의 동의하에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 - 학연협동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논문지도위원회에는 참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.			
⑨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(§30-①)	-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심사위원회(3인 이상, 지도교수 포함)를 구성하여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실적으로 인정한다. - SCIE학술지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에 석사과정 학생이 단독 1저자로 논문을 발간한 경우(온라인판/DOI 부여된 경우도 인정. 단, Review논문은 불인정)			
⑩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(학칙제68조③)	- 논문지도위원회의 권장사항을 따른다. - 석사,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입학전형평가위원회(해당 학생의 입학전형 당시 면접평가위원회)에서 정한다. 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 과정 모두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15학점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.			
⑪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(§18-⑧)	<삭제>			
⑫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	-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과 소속 교수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-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과정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우리 학과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. - 박사학위과정은 2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이 경과한 후 논문지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지도위원회 미팅을 가져야 하며, 참석인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이어야 한다. - 종합시험면제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 -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려면 SCI(E)급 국제학술지에 2편 (주저자 1편 포함) 이상을 출판 또는 해당저널의 편집장으로부터 게재승인 편지 (acceptance letter)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취업된 비전일제 학생 및 학연협동과정 학생의 경우, 논문지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정사항에 따라 학위 청구논문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- 박사학위과정은 5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논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지도위원회에서 연구내용을 심사하여 학위 청구논문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-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는 이학석사/이학박사 또는 식품공학석사/식품공학박사 학위를 선택할 수 있다. - 식품공학석사/식품공학박사 학위를 청구하고자하는 자는 제1분야(식품공학/식품가공학), 제2분야(식품화학/식품영양화학), 제3분야(식품미생물학/식품발효공학) 분야별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	
⑬ 부칙조항	-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 - 제2조(경과조치)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단,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내규에 따른다. - 제3조(부칙) 학연협동과정 학생의 경우,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			